서울특별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345

제출년월일 : 2018년 2월 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25개 지역센터 확대·운영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주거복지 자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중앙센터 필요

※ 기존 운영 중인 10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추진체계와 근무인력의 역량 차이로 시민들에게 불균등한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

나. 중앙센터의 역할·기능을 극대화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성 활용과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지양 등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 추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22조(주거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19조(센터의 설치), 제21조(관리 및 운영)
- 중앙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18.1.9.)

○ 추진 필요성

- 중앙센터의 주요기능은 25개 지역센터의 상담 및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찾동 등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자원 유치,

전문교육 및 홍보 등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①자원(프로세스 표준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임대주택 지원 등). ②공신력(민간자원 유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③전문인력 및 경험(교육·홍보) 보유가 반드시 필요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간 서울시의 18만여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관리하면서 쌓아온 정보와 전문인력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공사로서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민간자원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고, 주거복지통합시스템 자체예산으로 구축중에 있어 이미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음

※ 현재 중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수의계약이 필요하며, 향후 2회차 중앙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조직담당관 주관의 종합성 평가와 병행하여, 센터 운영성과 자체평가 및 문제점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위탁기간 만료 도래시 공모를 검토할 예정

다. 위탁사무 내용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20조에 따른 사무

○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구축 및 제공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주거복지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19.12.31.

마. 위탁방식 : 수의계약(서울주택도시공사)

바. 설치장소 및 규모

○ 위 치 : 영등포구 영신로 183(당산SH빌 청소년시설 내)
○ 규 모 : 사무실(59.3㎡), 상담실(77.4㎡, 주거단체와 공동사용)

바. 위탁비용 : 800,000천원(10개월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SH공사의 자부담분을 제외하여 위탁비용을 재산정하라는 의견이 있어 금액 협의중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거기본법 제22조

>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 작성자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박주현 (☎ 2133 - 7028)